



“AI·반도체 연구소도 보세공장” 관세청, 보세가공수출 규제혁신으로 첨단산업 지원

[이주의 초점]

북극항로 개척 위한 보세구역 확대, 첨단산업 클러스터
관할 세관 일원화 등 ‘수출 PLUS+ 전략’ 선포 (4p)

[현장 특파원]

외환검사, 운송·서비스·AEO 업체도 안심할 수 없다!
관세청 외환검사 추진 방향 및 대응 방안 (21p)

[한눈에 보는 관세 정책]

2026년 관세행정 무엇이 바뀌나 (25p)

[위클리 뉴스]

“희토류 관련 HSK 신설·세분화” 산업통상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면세품 환불 시 세금 먼저 안 내도 된다” 세관서
세금고지 취소 가능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연중 관세조사 (9p)

[오피니언]

인도에서는 자동차에 사용되면 모두 제8708호
(자동차 부분품)? (14p)

[판례 동향]

덤핑방지관세 관련 법령과 판례분석 (32p)

[품목분류 동향]

이산화규소 99% 이상 석영 모래의 HS CODE (39p)



※ Chat GPT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2월 9일(통권 제2166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AI·반도체 연구소도 보세공장” 관세청,
보세가공수출 규제혁신

09 Weekly News

오피니언

- 14** 시선, 인도통관
윤승현 언스트앤영(Ernst&Young) India 관세사
인도의 주요 관세 이슈 ‘자동차 부품품 품목분류’
최영훈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관세관
품목분류 리스크 줄이는 길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CAAR)’

21 현장특파원

‘외환검사’ 운송·서비스·AEO 업체도 안심할 수
없다! 관세청의 2026년 외환검사 추진 방향과
기업 대응 전략

관세행정실무해설

- 17** 한눈에 보는 관세 정책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 30** 질의응답사례
차량용 바닥매트의 HS Code

판례동향

- 32** 관세판례해설
덤핑방지관세 관련 판례분석

품목분류동향

- 39** 세번 바로잡기
이산화규소 99% 이상의 석영 모래
-

“AI·반도체 연구소도 보세공장” 관세청, 보세가공수출 규제혁신

북극항로 개척 위한 보세구역 확대, 첨단산업 클러스터 관할 세관 일원화 등 ‘수출 PLUS+ 전략’

미국의 관세 정책과 국가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동시에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 수출의 핵심 축인 첨단·유망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외형 성장을 이뤘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다. 수출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속도’와 ‘현장’을 키워드로 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이 규제 문턱을 낮추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 뛰어드는 이유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첨단·유망산업 수출 PLUS+ 지원단 발대식에서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출처: 관세청)

관세청은 2월 5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대표 기업 7곳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PLUS+ 전략’을 공식 발표하고, 이를 전달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출 지원단은 전국 세관과 수출기업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항공기 MRO[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개조(Overhaul)], ▲북극항로 등 3개 분야별 전담팀으로 운영된다.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관세청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해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동력을 강화하고, 보세가공수출제도를 중심으로 한 규제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 ‘수출 PLUS+ 전략’

관세청이 이번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운 것은 ‘보세가공수출제도’다. 보세가공수출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유예한 상태로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유망산업의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해 수출

한 비율은 90% 수준으로, 사실상 우리 수출 구조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산업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수출 회복을 이끈 이면에도 관세청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보세가 공제도를 활용한 신속한 생산·수출 체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과제인 미래 첨단산업 육성, 북극항로 개척, 대형 선박 건조와 같은 프로젝트에서도 보세가공제도의 활용은 필수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수출 PLUS+ 전략’은 ① 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② 비용·세금 절감(Lower), ③ 신속성·효율성 향상(Uplift), ④ 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전략을 축으로 한다.

■ 전략 ① Pioneer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 경쟁력은 시작된다”

첫 번째 전략인 ‘Pioneer’는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관세청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생산 단계 이전, 즉 연구·개발과 시험·검증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먼저 신기술·신산업 지원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연구소는 보세공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 원재료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매번 수입통관을 거쳐야 했고, 이로 인해 야간·공휴일에는 최대 수 시간에서 수십 시간까지 시제품 제조·검사가 지연되곤 했다. 이번 개선으로 연구·개발 단계부터 과세보류 상태에서 즉시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 개발 속도와 수출 경쟁력이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전략 ①의 주요 개선사항 ●

구분	기존	개선
첨단산업 연구소 보세공장 특허 허용	시제품 제조·가공 및 해당 연구소 등은 보세공장 특허 불허	시제품 제조·가공 및 해당 연구소 등을 보세공장 특허 대상에 포함
항공기 MRO 반입승인	건별 승인	포괄승인→향후 면제
FTZ 반입승인 간소화	관리부호 기타(79)	제조업(41)
종합보세구역 탱크터미널	2개(55기)	추가 지정 (HD현대오일뱅크 등 예정)

항공기 MRO(정비·수리·개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항공기와 부분품이 수입제한품목으로 분류돼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 반입 시마다 품목별·건별 반입승인 절차가 필요해 이에 따른 시간이 소요됐다. 또 정비·수리는 기타(부호 79)로 분류돼 개조 작업에 필요한 사용소비신고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포괄승인 절차를 도입하고, MRO 업종 관리부호를 ‘제조업’으로 변경해 사용소비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MRO 장소 제한과 작업 범위를 완화해 FTZ에서도 과세보류 상태로 정비·개조 작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글로벌 MRO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북극항로 개척은 정부 국정과제이자 미래 물류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이다. 관세청은 부산과

인근 지역의 오일탱크를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을 북극항로 전진기지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료 공급·병커링 수요 증가에 따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 전략 ② Lower “비용·세금 절감해 수출 원가 낮춘다”

두 번째 전략은 기업의 생산원가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세청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담보 부담이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우선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관할 세관을 일원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장은 건설 단계에서는 ‘보세건설장’, 완공 후에는 ‘보세공장’으로 관리된다. 문제는 기존 공장과 신규 공장을 단일 보세공장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관할 세관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해 업무 혼선과 신고 오류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완공 후 단일보세공장으로 통합이 예정된 경우, 건설 단계부터 기존 보세공장 관할 세관이 일괄 관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설비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던 행정 비용과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략 ②의 주요 개선사항 ●

구분		기존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보세건설장 관할세관		소재지 관할세관	통합 예정인 기존 보세공장 관할세관
석유제품 혼합·제조절차 간소화	보세운송	종합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 시 담보 제공	수출물품 제조 위해 종합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 시 담보 제공 면제
	환급대상 물품 반입절차	빈 탱크에 반입해 검사한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재이송	혼합용 탱크로 직반입*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선택 기한 연장		원료 사용 전 신청	제품 생산 후 수입신고 전까지 신청

* 정유(화학)사 반출→운송(선박)→종합보세구역 반입→블렌딩용 탱크 직반입→중량 등 검사→타제품과 혼합 제조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때 요구되던 담보 제공과 복잡한 검사 절차도 대폭 완화된다. 고가·대용량이라는 물품 특성상 담보 비용이 막대해 업체의 금융부담이 컸고, 빈 탱크를 거쳐 혼합용 탱크로 재이송하는 과정에서 2~3일이 더 발생했다. 앞으로는 혼합용 탱크에 직반입을 허용하고, 보세운송 담보 제공을 면제해 비용절감을 거두는 동시에 빈탱크 활용도를 높여 업계 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입할 때 기업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도 ‘원료 사용 전’에서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된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후 추징 위험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 전략 ③ Uplift “수출 속도가 곧 경쟁력이다”

세 번째 전략은 생산성과 물류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야간·공휴일에도 원재료를 즉시 사용하고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생산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반입 시점과 관계 없이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반입된 모든 원재료에 대해 허용돼 제조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을 적재지로 보세운송 시 페덱스(FedEx), DHL 등 특송업체의 집하차량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소형 수출물품의 경우 추가 운송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을 해소해 물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수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시점을 보세공장 도착보고된 때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로 단축한다.

● 전략 ③의 주요 개선사항 ●

구분	기존	개선
자율관리보세공장 야간·공휴일 선사용·후사용신고 대상	해당 야간·공휴일에 반입된 원재료	반입 시점에 관계 없이 모든 원재료*
수출물품 보세운송차량	보세공장 소유차량, 보세운송업자 등록 차량	보세공장 소유차량, 보세운송업자 등록 차량 + 특송업체 집하차량**
입항전 사용신고 전산자동수리 시점	보세운송 도착보고 시	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시 (4단계 단축)***

* 마약, 총기, 동식물 검역, 방위사업 등 세관장 확인 대상 13개 범 해당 품목은 제외

** 보세공장 운영인은 보세운송업자로, 특송업체 집하차량은 보세운송 차량으로 등록

*** 해외 출항→적재화물목록 제출→입항전 사용신고→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입항→하역→보세운송→도착보고

■ 전략 ④ Self-Manage “자율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일시 보세작업, 내국작업, 장외 일시장치와 관련한 허가·신고 절차를 대폭 생략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인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이 내국작업 시 관련 허가 및 종료신고를 생략하고 업체 스스로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내국작업 허가 신청부터 종료보고까지 연간 약 1만 1,000건에 달하는 등 관리절차가 복잡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시 허가 신청, 반출입신고, 보세운송 신고 및 완료보고도 생략된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은 반출입 및 작업내용을 ERP 시스템으로 추적관리가 가능하며, 유사한 장외작업은 자율관리가 허용되고 있어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의 경우도 업체 자율관리로 전환해 업무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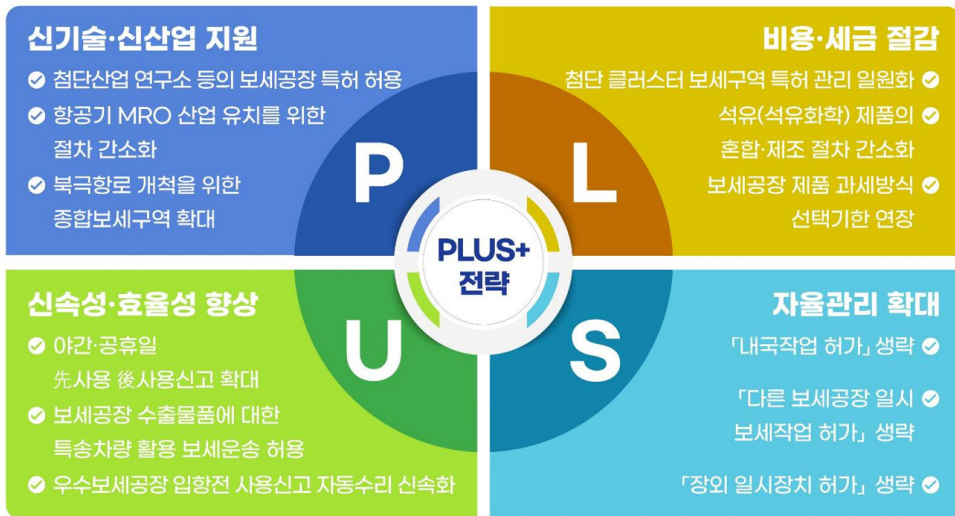
● 전략 ④ 자율관리보세공장 주요 개선사항 ●

구분	기존	개선
내국작업 허가	내국작업 허가(신청)→내국작업→ 내국작업 종료신고→내국물품 반출	허가·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업체 자율관리로 전환 (단, 분기별 반출입 내역 제출)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허가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 작업허가→ 반출신고→보세작업→반입신고→ 완료보고	허가·신고·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업체 자율관리로 전환
장외 일시장치 허가	장외 일시장치 신청·허가→반출→ 장외 일시장치→반입(보세운송) 신고	(단, 분기별 반출입 내역 제출)

거대 중량(부피)의 물품을 보세공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일시보관할 경우 세관에 '장외 일시장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 또한 생략되고 자율관리로 전환된다. 해상 이동 시 날씨 영향, 예상 외 검사 불량 등 현장 변수로 장외장치 계획이 변경되는 것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 첨단·유망산업 수출 4대 전략 12개 과제 ●

PLUS+ 전략 : Pioneer, Lower, Uplift, Self-Manage



출처 : 관세청

관세청은 올해 1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이번에 발표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부터 제조,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전략에 관해 “규제 혁신과 민관 협력을 통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토류 관련 HSK 신설·세분화” 산업자원안보실 1호 정책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안보실 출범 이후 제1호 정책으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월 5일 ‘산업안보 공급망 TF’와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글로벌 희토류 공급의 70~80%가 영구자석 제조에 사용된다. 이번 대책은 광산 개발부터 분리·정제, 제품 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를 대상으로 한 종합 대응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출처: 산업통상부

우선 정부는 단기적인 수급 위기에 대비해 통상 협력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희토류 수출입 통계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품목코드(HSK)를 신설·세분화한다.

희토류 확보처를 다각화하기 위한 자원외교와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프로젝트 중심의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6년 해외자원개발 용자 예산은 전년 대비 285억원 늘어난 675억원으로 확대되며, 용자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까지 상향된다.

국내 희토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내재화 전략도 병행된다. 정부는 국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재자원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기술혁신펀드 내에 ‘희토류 R&D 펀드’를 새로 조성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 김성은 기자 |

“면세품 환불 시 세금 먼저 안내도 된다” 세관서 세금 고지 취소

관세청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발생하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면세품 환불 과정에서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했던 절차가 개선되고, 경영난을 겪는 체납 수출입 기업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2월 4일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2건의 민생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면세점 환불 절차 개선이다. 기존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했다. 최종적으로 물품을 반품하는 상황이지만, 세금을 선납해야 하는 구조여서 불편과 민원이 반복돼 왔다. 관세청은 세금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면 세관에서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생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납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체납 발생 즉시 담보물을 압류·매각해 국고로 충당하도록 운영돼 왔다. 이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매출 회복 가능성이 있고 체납 해소가 가능한 업체는 담보물의 즉각적인 매각 대신 분납을 허용하고,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의결했다. 단순 강제 징수보다는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인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 수출입기업들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준식 기자 |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연중 관세조사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외국산 저가제품의 덤핑 공세가 거세지자,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불공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관세청은 2월 3일 덤핑 단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일회성·기획 단속 중심이 아닌, 연중 상시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건에 불과하던 덤핑 조사 건수는 2024년 10건, 2025년에는 1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및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을 통한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 428억원 상당을 적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주요 세관에 총 4개 전담팀을 신설해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정기 덤핑심사제도’ 도입이다. 기존에는 이슈 품목이 발생하면 일정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했지만, 앞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가 진행된다. 작년 12월 말 기준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은 열간 압연 후판제품, 석유수지, 폴리아미드 필름, 백시멘트 등 총 28개 품목에 달한다.

관세청은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은 물론, 철강과 석유화학제품 등 덤핑 이슈 품목도 심사를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덤핑물품 공급국 내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변경만으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제3국이나 국내 보세구역에서의 경미한 변경, 제3국에서의 조립·완성 행위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회덤핑 의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경 여부,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회피 시도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한층 강화해 반덤핑 정책 및 집행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 김성은 기자 |

“수출 핵심은 원산지 관리” 중소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 컨설팅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원산지 관리 전반을 아우른다.

사업기간	2026년 2~6월																		
지원대상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약 134개 기업)																		
지원절차	<table border="1"> <tr> <td>사업 공고</td> <td>></td> <td>신청 및 접수</td> <td>></td> <td>업체 선정 및 컨설턴트 배정</td> <td>></td> <td>컨설팅 수행 및 완료</td> </tr> <tr> <td>2월 2일</td> <td></td> <td>2월 9~20일</td> <td></td> <td>2~3월</td> <td></td> <td>3~5월</td> </tr> </table>	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컨설턴트 배정	>	컨설팅 수행 및 완료	2월 2일		2월 9~20일		2~3월		3~5월				
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컨설턴트 배정	>	컨설팅 수행 및 완료													
2월 2일		2월 9~20일		2~3월		3~5월													
선정기준	1순위: 대미 수출기업 2순위: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소상공인 우선 선정 등)																		

특히 올해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대미 중소 수출기업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관세청은 상반기 내 사업을 집중적으로 마무리해 중소 수출기업이 원산지

관리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검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에서 진행되며, 기업 규모와 컨설팅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약 134개 기업으로, 대미 수출기업이 1순위로 선정된다. 2월 9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수산식품 수출 '인증 장벽' 낮춘다... 국제인증 취득 지원 대폭 확대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국제인증 취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2026년 수출인증 취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지원 대상 국제인증 종류를 기존 48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고, 지원기업 수도 지난해 157개사에서 225개사로 늘렸다. 인증 종류에 따라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최대 50%, 중견·중소기업은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인증은 국가별 수출요건 대응을 위한 해외 식품 규격 인증과 해외 대형 유통업체 진입을 위한 수출 전략 인증으로 구분된다. 해외 식품 규격 인증에는 이슬람 관련 인증 할랄, 유대교에 따른 코셔, 친환경 인증을 비롯해 비건, Non-GMO, 글루텐프리 등 품질 규격 인증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유럽 식품등록(EFSA) 등 총 34종이 포함된다. 수출 전략 인증은 수산양식관리협의회(MSC)·해양관리협의회(ASC) 등 지속가능한 수산물 인증과 이력추적 인증, 윤리경영 인증 등 16종으로 구성됐다.

수산식품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생산·제조·유통 기업이라면 3월 6일까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biz.k-seafoodtrade.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김성은 기자 |

한국·인도네시아 통화스와프 5년 연장

한국은행이 2월 5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양자 간 통화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원/루피아 통화스와프 계약을 다시 한번 연장했다. 이번 연장에 따라 통화스와프 계약의 적용 기간은 2026년 3월 6일부터 2031년 3월 5일까지다.

한국·인도네시아 통화스와프는 2014년 최초로 체결된 이후 2017년, 2020년, 202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기존 3년이던 계약 기간을 5년으로 늘렸으며, 만기 도래 시에는 양국 중앙은행 간 합의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연장으로 양국 중앙은행은 최대 10조 7,000억원 또는 115조 루피아 규모까지 상호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수출입 대금을 안정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에서도 역내 교역과 금융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서준식 기자 |

‘식품안전법’ 전면 개편한 베트남, 수입식품관리 강화··· 4월 시행

베트남정부가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전면 개정된 ‘식품안전법 시행령’의 적용 기간을 4월 16일로 유예했다.

2월 3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하노이지사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가 식품안전법 시행령(제46/2026/ND-CP)과 정부 결의안(제66.13/2026/NQ-CP)을 올해 1월 26일부터 시행했지만,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되면서 모든 식품의 통관이 지연됐다. 식품검사 방법, 절차, 검사 소요시간 등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통관부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항구 도착물품에 대한 경과 규정도 없어 1월 말 기준 약 30만톤에 달하는 수입식품 물량이 국경검문소에 적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혼선이 장기화되자 결국 베트남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고 해당 시행령 적용 시기를 4월 16일로 유예했다(결의안 제09/2026/NQ-CP).

베트남 내 가짜 분유 유통 사건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산되자 제도 전반을 손질했지만, 구체적인 집행 지침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행돼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준비할 수 있도록 4월 15일까지 유예기간이 생겼지만, 이번 개정을 계기로 베트남 식품 시장의 규제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건강보호식품, 특수용도식품, 미량영양강화식품, 보충식품 등 기능성식품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식품·식품원료·식품첨가물 등에 대해 시장유통 이전 단계에서 자가공표 또는 유통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가공표와 유통등록의 이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GMP, HACCP, ISO22000 등 품질관리 기준 기능성식품 생산시설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식품 제조업체에는 국제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수입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기구·용기·포장재는 모두 국가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 방식도 적합성 및 리스크 수준에 따라 강화·일반·간이검사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일부 품목에 적용되던 검사 면제 제도가 폐지되면서 수입식품 관리는 한층 엄격해졌다. 이렇다보니 HACCP·ISO 등 국제표준 달성 여부, 공정·원료·로트 추적 시스템, 시험성적서 운영을 베트남 수입·유통 파트너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노이지사는 특히 한국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프리미엄·안전’ 이미지를 강점으로 삼는 동시에, 라벨링·성분 표시·품질관리·이력 추적 등 증빙 중심의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종 확정 법령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요건의 정의와 적용 시점, 집행 일관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요국과의 다자동맹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한·인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도 진출과 관련해 복잡한 규제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상존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다. 인도 내 최대 회계법인 Ernst&Young India의 윤승현 관세사가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주요 관세 이슈를 짚어봤다.

자동차에 사용되면 모두 제8708호(자동차 부분품)?
인도의 주요 관세 이슈 '자동차 부분품 품목분류'



윤 승 현 | 언스트앤영(Ernst&Young) India 관세사

1. 인도 진출 기업이 직면하는 품목분류 분쟁



인도는 자동차 수요와 성장 동력이 큰 시장인 만큼 다수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진출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국 또한 체나이 및 푸네 권역을 중심으로 현대차가 진출했고, 기아차는 아난타푸르 생산기지를 거점으로 운영하며 인도 시장에서 상위권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완성차 제조거점을 축으로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HL만도 등 한국계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인도 주요 자동차 클러스터에 생산 및 공급 거점을 구축해 왔다.

이처럼 한국 자동차 산업의 인도 내 밸류체인이 커질수록, 진출 기업들은 다양한 관세 이슈에 직면한다. 그중 대표적인 이슈가 자동차 부품품의 HS Code 품목분류다. 자동차 한 대는 소형 부품까지 포함하면 통상 3만여 개의 다양한 부품품으로 구성된다. **품목수가 많은 만큼 품목분류 쟁점도 다양한 품목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부품의 모듈화·전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품목분류 판단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 관세당국의 조사·사후검증 과정에서 쟁점이 되기 쉽다.** 지난해 기아차 반조립제품(CKD, Complete Knock Down) 부품 품목분류 이슈로 약 2,000억원의 관세 추징이 통지됐다는 언론 보도가 주목받은 배경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2.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판결과 자동차 부품품(제8708호) 품목분류

2021년 3월, 인도 대법원은 철도 신호 시스템에 사용되는 계전기(Relay)를 계전기(제8536호)가 아닌 철도 신호장비 부품품(제8608호)으로 분류한다고 판시했다(Westinghouse Saxby Farmer Ltd vs Comm of Central Excise, Calcutta). 본 판결에서 인도 대법원은 해당 물품이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고, 주된 사용처가 철도 신호장비라는 점 등을 근거로 ‘개별 물품’이 아니라 ‘부품품’으로 판단했다.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르면 품목분류는 원칙적으로 각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통칙 제3호 가목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계전기(제8536호)와 철도 신호장비 부품품(제8608호)이 경합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물품을 특정하는 계전기(제8536호)로 분류하는 방향이 자연스럽다.

문제는 이 판결 논리가 **“독립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고, 주된 사용처가 자동차라면 그 부품은 자동차 부품으로 봐야 한다”는 방식으로 확대 해석되면서, 기존에 제84류·제85류·제90류 등으로 분류되던 개별 물품까지도 자동차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자동차 부품품(제8708호)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해당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인용되며 자동차 부품 전반에 대한 관세조사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통관 지연과 공급망 비용 증가 등 실무적 혼선이 발생했다.

이러한 혼선에 대응해 2022년 1월 인도 관세청(CBIC)은 지침(Instruction No. 01/2022-Customs)을 통해 자동차 부품품 품목분류 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일반화해 확대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HS 협약 및 품목분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Instruction No. 01/2022-Customs).

3. 프리미어 인스트루먼트(Premier Instrument) 판결과 모듈화 부분품 품목분류

2015년 4월, 인도 대법원은 속도계, 연료게이지, 온도계 등 여러 계기류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한 클러스터(Cluster)를 계측기기(제9029호)가 아닌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으로 분류한다고 판시했다(Premier Instrument & Controls Ltd vs Commissioner). 본 판결에서 인도 대법원은 속도계·연료게이지·온도계 등 개별 계측기들이 대시보드 클러스터로 결합되는 순간 개별 계측기기로서의 독자성이 약화되며, 해당 조립체가 자동차에 전용돼 사용되고 독립된 계측기로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으로 분류했다.

한편 HS 제90류 주 제3호 및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s)는 그 기계의 주된 기능(principal function)에 따라 분류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클러스터는 다양한 계측기들이 하나의 장치로 통합된 복합기계이며, 기능 측면에서는 제9029호가 포괄하는 속도·연료·온도 등의 측정 기능이 핵심이므로 제9029호로 분류하는 방향이 자연스럽다.

문제는 이러한 판결 논리가 모듈화된 자동차 부품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여러 기기들이 하나의 장치로 통합된 모듈은 모두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주장 하에 관세조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4. 품목분류 법리부터 기술자료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인도는 품목분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특히, 인도에서 물품이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으로 분류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15%의 기본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한국과 달리 HS Code에 따라 0~18%의 부가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인도의 세율 구조상 18%의 높은 수입 부가세(IGST)가 적용돼 기업의 세액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도 관세당국은 품목분류 변경을 이유로 기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문제 삼거나, 한·인도 CEPA 특혜세율 적용을 부인하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사례도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와 컴플라이언스 양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인도 관세당국은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개별 물품을 특정된 호로 분류하기보다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으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관세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HS 해설서 및 관련 분류 사례를 근거로 품목별 분류 논리를 정교하게 구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인도 관세당국이 품목분류 이슈로 관세조사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판례를 인용해 분류 오류를 주장하는 경우, 판결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호의 용어, 주(Notes) 규정, HS 해설서에 기반한 법리 검토를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은 품목군이 매우 넓기 때문에, 관세당국이 제시하는 분류사례와 실제 조사 대상 물품이 기술적·기능적·구조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모듈화·전장화로 인해 과거 사례와 현재 물품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 사양, 구성, 작동원리, 장착방

식 등 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HS Code 변경을 이유로 기존 원산지증명서를 부인하고 한·인도 CEPA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 원산지가 인정된 경우라면 이후 품목분류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물품이 한·인도 CEPA상 동일한 특혜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특혜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2025년 9월 인도 대법원은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를 확정적으로 입증하는 이상 조건부 면제의 실질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봐야 하며, 최초 수입신고 시점에 다른 분류나 고시를 주장했더라도 단지 그 사유만으로 혜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LG Electronics India Pvt Ltd vs Commissioner of Customs).

마지막으로, 수입 규모가 크거나 품목분류 쟁점이 예상되는 품목이라면, 인도 관세 유권해석국(CAAR,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에서 진행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사전적으로 관세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요국과의 다자동맹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한·인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도 진출과 관련해 복잡한 규제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상존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다.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관세관에게 인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통관 문제를 들어봤다.

해외 수출통관 애로 가장 많이 보고되는 국가, 인도 품목분류 리스크 줄이는 길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CAAR)'



최영훈 |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관세관

1. 해외 수출통관 애로 중 인도가 가장 많은 이유 '품목분류'

국제 교역에서 정확한 품목분류(HS Code)의 결정은 흔히 '첫 단추를 끼우는 일'에 비유된다. 인도에서는 이 첫 단추의 중요성이 특히 크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인 동시에 높은 관세율과 복잡한 통관 절차로 인해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부담과 행정 리스크가 매우 큰 국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해외에서 보고되는 수출통관 애로 사례를 보면,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중 상당수가 품목분류와 관련돼 있다. 한·인도 CEPA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품목분류가 인도 세관의 판단과 다르게 결정되면 협정관세 혜택은 배제되고, 추징세액 부과는 물론 조세정보총국(DRI)에 의한 장기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0년 도입된 원산지 관리 규정(CAROTAR)은 단순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넘어, 품목분류에 기초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설명과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와의 교역에서 품목분류는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통관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2. 주요 품목분류 분쟁 사례

인도에 진출한 한 한국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통신 기지국용 장비(Radio Unit)를 수입하면서 인도 세관과 품목분류 해석 차이로 상당한 금액의 추징세액을 부과받았다. 2021년 시작돼 약 4년에 걸친 장기 조사가 진행되면서 기업 활동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와이퍼 모터, 전자제어장치(ECU) 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은 이를 '전동기' 또는 '전자 제어기기'로 분류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세율 적용을 주장하지만, 인도 세관은 이를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해 과세 및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행정 기조의 배경에는 본지 오피니언(15p)에서 언급했듯이 2021년 선고된 '웨스팅하우스 판결'이 있다. 인도 세관은 이 판례를 근거로 범용성이 있는 부품이라 하더라도 특정 완성품에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부분품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기본관세율(15~20%)과 사회복지세 등 가산세율(약 8%)이 더해지면서, 품목분류 분쟁은 곧바로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직결된다.

3.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CAAR) 활용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품목분류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 세관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 관세청(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이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CAAR,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는 불확실한 인도 통관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이다.

특히 인도의 비대면 통관 심사 체계 하에서는 현품 확인 없이 서류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통관 단계에서 품목분류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인도 세관의 유권해석을 확보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인도 관세청은 2021년 4월,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CAAR(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을 신설하고, 델리와 뭄바이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누적 약 400건 이상의 사전회시가 이뤄졌으며, 전자·기계·자동차 부품 등 분쟁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다수를 차지한다.

사전회시는 수입자, 통관사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입 예정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세관 조사 중이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CAAR-1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통관 예정 세관 1곳을 지정해 제출한다. 법정 처리 기간은 90일이며, 자료 보완 기간은 제외된다. 필요시 청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결정이 통지된다. 사전회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동일·동종 물품에 대해 타 기업이 받은 사전회시도 관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4.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확인 방법

CAAR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도 관세청이 공표한 공식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자료는 다음 인도 정부·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인도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www.cbic.gov.in)에서는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Regulations, 2021> 규정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는 사전회시 신청 요건, 절차, 관할, 유효기간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또한 CAAR 신청에 사용되는 CAAR-1 양식 역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식 PDF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기술 설명 자료의 범위와 형식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사전회시 결정례는 관세청이 운영하는 Advance Rulings 전용 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실제 품목분류 사례별로 인도 세관의 판단 논리를 확인할 수 있어 유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한편, 인도 재무부 산하 세입국(DoR, Department of Revenue) 홈페이지(dor.gov.in)의 Advance Rulings 섹션에서는 사전회시 제도의 개요와 법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전반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5. 시사점 및 수출입기업 유의사항

필자는 지난해 CAAR 델리 사무소를 방문해 담당자인 시르마 난다(Sirma Nanda) 과장을 면담한 바 있다. 면담 결과, 한국 기업들의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 활용도는 아직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처리 기간이 길고, 사전회시 결과가 기업의 기대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인도 통관 환경을 고려할 때, 통관 단계에서 품목분류 이견을 사후적으로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인도 세관은 자율신고(Self-Assessment) 원칙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관행이나 과거 통관 이력이 수입자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지는 않는다.

사전회시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본질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인도에서는 수입국 세관의 판단이 과세와 조사로 직결되므로,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거나 유사 세번 간 세율 차이가 큰 경우에는 사전회시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 후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도 관세행정엔 기업 지원보다는 행정 책임과 규정 준수를 중시한다. 제출 서류의 사소한 오류 하나로도 통관 절차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역을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인 관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환검사' 운송·서비스·AEO 업체도 안심할 수 없다

관세청의 2026년 외환검사 추진 방향과 기업 대응 전략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 방침을 밝히면서, 외환검사에 대한 기업들의 긴장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 제조·수출입기업을 넘어 운송·서비스업까지 검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 13일 '고환율 대응 불법무역·외환거래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수출대금 미회수',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 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변칙 무역결제',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재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는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규모는 약 2,900억달러로 한화 427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세청이 '고환율 대응 불법무역·외환거래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해 상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기업들 사이에서는 외환검사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수출입기업, 외환검사 관심도 고조



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최정식 단장(출처: 한국무역협회)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2월 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수출입기업을 위한 외국환 거래 제도 및 환율 전망 설명회’에서도 확인됐다. 설명회장은 준비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참석자가 몰리며, 환율과 외국환 거래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관세법인 대륙아주와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강화되는 외환검사에 대비해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과 환리스크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최정식 단장은 “최근 고환율 기조 속에서 정부는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계약·대금결제·해외투자 등 수출입기업 활동 전반에서 외국환 거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설명회 강연자들은 공통적으로 “사소한 신고 및 보고 누락만으로도 과태료 부과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국환 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강조했다.

“외환검사, CEO·CFO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

제28대 관세청장을 역임한 천홍욱 법무·관세법인 대륙아주 회장은 “외환검사 제도는 지난해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바 있으나, 최근 환율 급등에 따라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엄정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통관·외환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외국환 거래구조와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세청 외환검사 실무 동향을 설명한 정기섭 대륙아주 대표관세사는 관세조사와 외환검사의 차이를 짚으며 “외환검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 ‘CEO 리스크’, ‘CFO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외환검사 주요 대상이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였다면, 올해부터는 검사 범위가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관세청은 은행을 통해 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의 수출입신고금액 간 편차가 큰 기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운송이나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외환검사가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기섭 대표관세사가 강조한 외환검사 사례(출처: 관세청)

실제로 관세청이 공개한 2024년 주요 외환검사 사례에는 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복합 운송서비스 업체가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화물운송서비스의 용역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지사에게 유보해 놔다가 이를 또 다른 해외 거래처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는 글로벌 PC게임 공급업체다. 러시아, 튀르키예, 싱가포르 등에 있는 PC게임 사용자에게 홍보 용역을 의뢰한 뒤 대가로 현금이 아닌 업체의 PC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게임머니)로 지급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정기섭 대표관세사는 “이들 사례는 단순한 수출입대금뿐 아니라 용역 대금의 영수도 외환검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선사, 포워드, 복합운송업체는 물론 콘텐츠·서비스·용역을 해외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검사도 지속해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물류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외환검사 통지 받았다면 일주일일 골든타임

그렇다면 실제로 외환검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관세청은 통상 검사 개시 15일 전 공문 형태의 이메일로 알리는데, 주로 기업의 수출입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이 통보서에는 검사 유형(서면·실지), 대상기간, 검사일정, 검사반 편성, 준비자료 제출요구 등이 포함된다.

만약 통보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세관 담당부서와 담당자, 검사반 표기를 확인하고 내부·외부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각각 1명씩 마련하는 것이다.

검사 유형에 따라 대응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서면검사는 자료 제출을 기반으로 사실확인 이뤄지며, 실지검사는 세관직원이 직접 기업에 상주하며 각종 서류와 ERP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 인터뷰를 병행한다. 서면검사 결과에 따라 실지검사로 전환할지 등을 검토하며, 실지검사는 종결까지 3~6개월 이상 소요된다.

정 관세사는 “서면검사의 경우 자율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위반 가능성이 발견되면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점검은 기업의 의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강력히 권장되는 편이다. 특히 위반가능성이 있다면 과태료 감경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경 사유 1개 해당 시 과태료 50% 감경,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추가 감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점검은 외환거래업체에서 외환검사를 받기 전 셀프 체크해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시 사용하는 자율점검 결과표와 점검 결과 상세 내용, 외국환거래 현황 요약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충실히 작성하면 서면검사로 종결되고 위반사항은 과태료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지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자칫 형사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실지검사는 보다 고위험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실지검사를 받게 됐다면, 우선 세관 직원이 상주할 공간을 마련하고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를 일원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상기간 계약, 통관, 결제, 회계 등 거래자료와 자율점검 보고서, 그밖에 요구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정기섭 대표관세사는 “수출입업체는 물론이고 물류업, 대외서비스 제공업 등 외국환 거래가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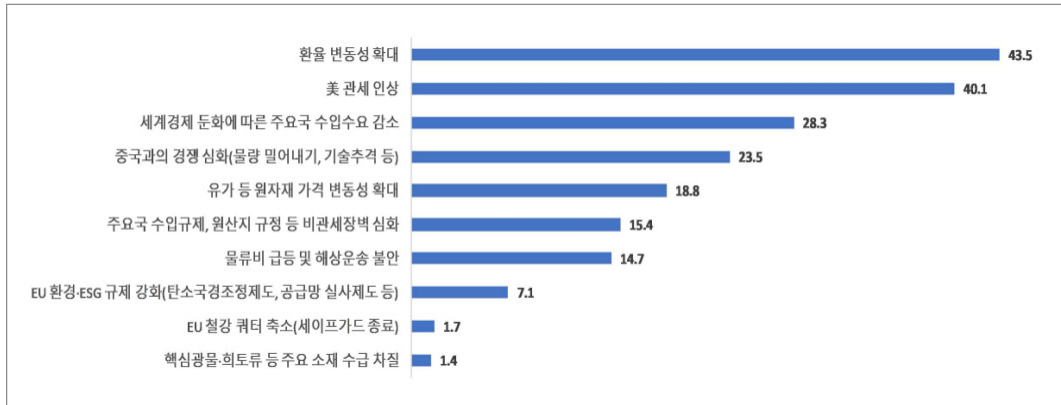
기업은 모두 외환검사에 대비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미리 외환리스크에 관해 외부 전문가에게 사전점검을 받을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만약 사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검사 계획 통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바로 외부 전문가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다. 정 관세사는 “통보 후 15일 내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축소된다”며, “통지서를 받은 후 일주일일 골든타임이라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황인욱 파트너변호사는 외국환 거래 단계별 신고·보고 의무사항을 기업들이 위반하기 쉬운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사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무역협회 이석재 자문위원은 올해 기업의 최대 대외 리스크로 지목된 ‘환율 변동성 확대’ 동향을 짚고 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무역협회는 지난달 21일 ‘수출기업의 2025년 경영환경 전망’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무역업계가 2026년 예상하는 가장 큰 대외 리스크로 ‘환율 변동성 확대(1위)’, ‘미 관세인상(2위)’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특히,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바이어로부터의 단가 인하 압박, ▲국내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 해외 바이어로부터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았거나(40.5%), 향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37.6%)고 응답한 비중은 78.1%에 달했다. 수입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 단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기업도 72.5%에 이르러 수출 채산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6년 예상하는 가장 큰 대외 리스크(%) ●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3순위 응답, 가중점수 산출 후 비중 계산, 1순위 1배/2순위 0.66배/3순위 0.33배씩 가중치 부여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최정식 단장은 “외국환 거래는 수출입 업무 전반에 내재된 만큼 사전점검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복잡한 외국환 거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법령 위반이나 단속 리스크를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무역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2월 6일, 관세청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①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②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③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본지는 이 코너를 통해 주요 제도를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한다.

(인포그래픽: 관세청 제공)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핵심분야 1]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 ①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6월 시행 예정)
②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6월 시행 예정)
③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 개선(1월 1일 시행)

[핵심분야 2]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 ④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1월 1일 시행)
⑤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 제외(1월 1일 시행)
⑥ 중소기업확인서 디지털 방식으로 원스톱 처리(4월 시행 예정)
⑦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1월 1일 시행)

[핵심분야 3]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 ⑧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 개선(1월 1일 시행)
⑨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 개선(1월 1일 시행)

01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

총 전

□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 수출가격 400만원(FOB 기준) 이하

달라지는 내용

□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
· 수출가격 500만원(FOB 기준) 이하

간이수출 신고기준

효과



400만 원



500만 원

수출신고 편의성 제고, 시간·비용 절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기대효과: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고가프리미엄 상품의 수출신고 편의성 제고, 신고 수수료 절감

시행일: '26. 6. 26. 시행 예정(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3조 개정)

02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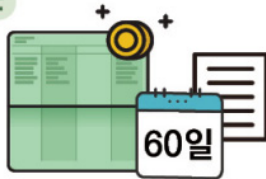
종 전

-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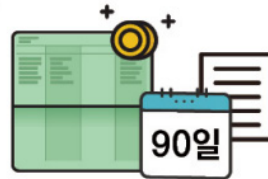
달라지는 내용

-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

기존



개선



확정가격
신고기한 연장

기대효과 풀필먼트 수출시 확정가격 신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확한 수출대금 신고로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사전 예방

시행일 '26. 6. 26. 시행 예정(「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42조 개정)

03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 개선

종 전

- 혼용작업 신청기한
 -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전까지
-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
 -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

달라지는 내용

-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
 - 혼용작업 승인 신청을 수입신고 전까지 기한 확대
-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수입신고 전까지 기한 확대



기대효과 단순 사전 승인 누락에 따른 과도한 추징을 방지하고, 유리한 방식의 과세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시행일 '26. 1. 1. 시행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관세법」제188조, 제189조 개정)

04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종 전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 등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감면 사유 확대
 - (현행과 같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내 수정 신고(사전심사 신청 이후 해당 물품이나 동일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로 한정)

신설



기대효과 납세자 편의 증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로 HS불확실성 해소 등

시행일 '26. 1. 1.시행(이 법 시행 전에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시행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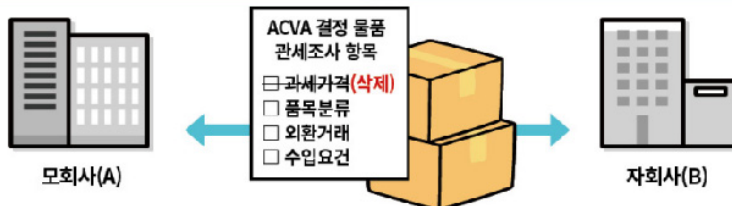
05 ACVA 결정 물품 관세조사(과세가격 분야) 제외

종 전

-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 관세조사 가능
 -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의 변경 여부
 - 중요한 부분 고의 누락하거나 허위 작성 여부
 -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하는지 여부

달라지는 내용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 제외
 - 과세가격 이외 분야(품목분류, 외환거래, 수입요건 등) 가능



기대효과 납세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성실신고 문화 확산

시행일 '26. 1. 1. 시행(「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9조 개정)

06 중소기업확인서 서류 제출을 디지털 방식으로 원스톱 처리

종 전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 제출
- 수출입기업이 수출환급 등 필요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직접 제출

달라지는 내용

- 관세청-중소벤처기업부간 시스템과 데이터 연동으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간소화
- 세관 담당자가 중소기업 여부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 자동 확인

기존



개선



기대효과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행정 부담 경감하고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연동으로 증명서의 신뢰도 확보

시행일 '26. 4월 시행 예정

07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종 전

- 부호의 관리
- (신청유형) 신규, 변경(정보, 부호), 사용정지
- (유효기간) 없음

달라지는 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신설, 미갱신 시 처리사항 신설
- (신청유형) 신규, 변경(정보, 부호), 사용정지, 갱신, 해지
- (유효기간) 1년



수입자 정보 현행화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대효과 수입자 정보 현행화와 개인정보 보호 목적에 기여

시행일 '26. 1. 1. 시행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16조 개정)

08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

종 전

- 보세운송시 운송수단
 - 운송수단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보세운송(위반시 과태료)
 - *운송수단 미신고시 처벌 불가

달라지는 내용

- 운송수단 신고의무 신설
 -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보세운송(위반시 과태료)

< 사례 >

개정전	· A사는 보세운송 신고 후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차량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하였으나, 운송수단 허위신고로 처벌받지 아니함
개정후	· B사는 보세운송 신고 후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차량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하여 운송차량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음

기대효과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차량) 신고의무를 명확히하여 밀수출입 등 통관질서 교란행위 방지

시행일 '26. 1. 1. 시행(「관세법」제216조 개정)

09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성립요건 개선

종 전

-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요건(제19조)
 -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 수령
 -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 제공

달라지는 내용

-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요건 개선
 -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 수령
 - <삭제>



구매시 수입물품의 관세를 함께 결제



부족세액 발생



연대납세의무

구매대행업자가 잘 못 납부된 관세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가짐

기대효과 불법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을 저가로 허위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부당하게 관세 등 부족분을 화주가 부담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

시행일 '26. 1. 1. 시행(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개정)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카매트의 HS Code

차량용 바닥매트의 HS Code를 알려주세요.

문의하신 물품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특정 형상의 바닥깔개라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의 ‘기타’의 ‘기타’로 봐 제3926.90-9000 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90	기타
9000	기타

수출 / 수출신고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신고서 작성 시
수출종류는 어떤 코드로 기입해야 하나요?**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운영인이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양수한 자가 수출, 수입하려는 경우(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외국의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국내업자가 수출, 수입하는 경우 포함)에는 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세공장에서 바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종류는 보세공장에서부터 수출(B)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RCEP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자사에서 생산한 물품을 일본에 수출하고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원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 다. 우편물·택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중략> ...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제4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①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 관련 입증서류 [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4. 규칙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포괄)확인서
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재명세서(BOM)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자재명세서를 말한다.

덤핑방지관세 관련 판례분석

김민주 |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쟁송팀)

1. 들어가며

덤핑방지관세는 일반관세와 달리, 특정 물품이 덤핑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특별관세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원칙적으로 관세율표에 따른 세율에 따라 결정되지만, 덤핑방지관세는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과 별개로 실행세율에 추가해 부과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실무에서 덤핑방지관세 관련 분쟁은 대체로 “이 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쟁점은 훨씬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수입자는 자신의 물품이 덤핑방지관세 조사대상물품과 다르다거나, 동종물품이 아니라거나, 거래가격이 오히려 높다거나, 용도가 달라 국내산과 경쟁관계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반복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흐름을 보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는 개별 수입자의 거래사정에 따라 임의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과 그 위임에 따른 규칙, 그리고 무역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구조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어떤 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는 결국 관련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이 글에서는 덤핑방지관세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해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정리하고 실무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덤핑방지관세 관련 법령

■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 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 <중략> ...

④ 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
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⑤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⑥ 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② 주무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⑤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덤핑률} = \frac{\text{조정된 정상가격} - \text{조정된 덤핑가격}}{\text{과세가격}} \times 100$$

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영 제65조 제7항에 따른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3.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

「관세법」 제51조에서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실질적 피해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해 해당 물품에 대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 재정경제부령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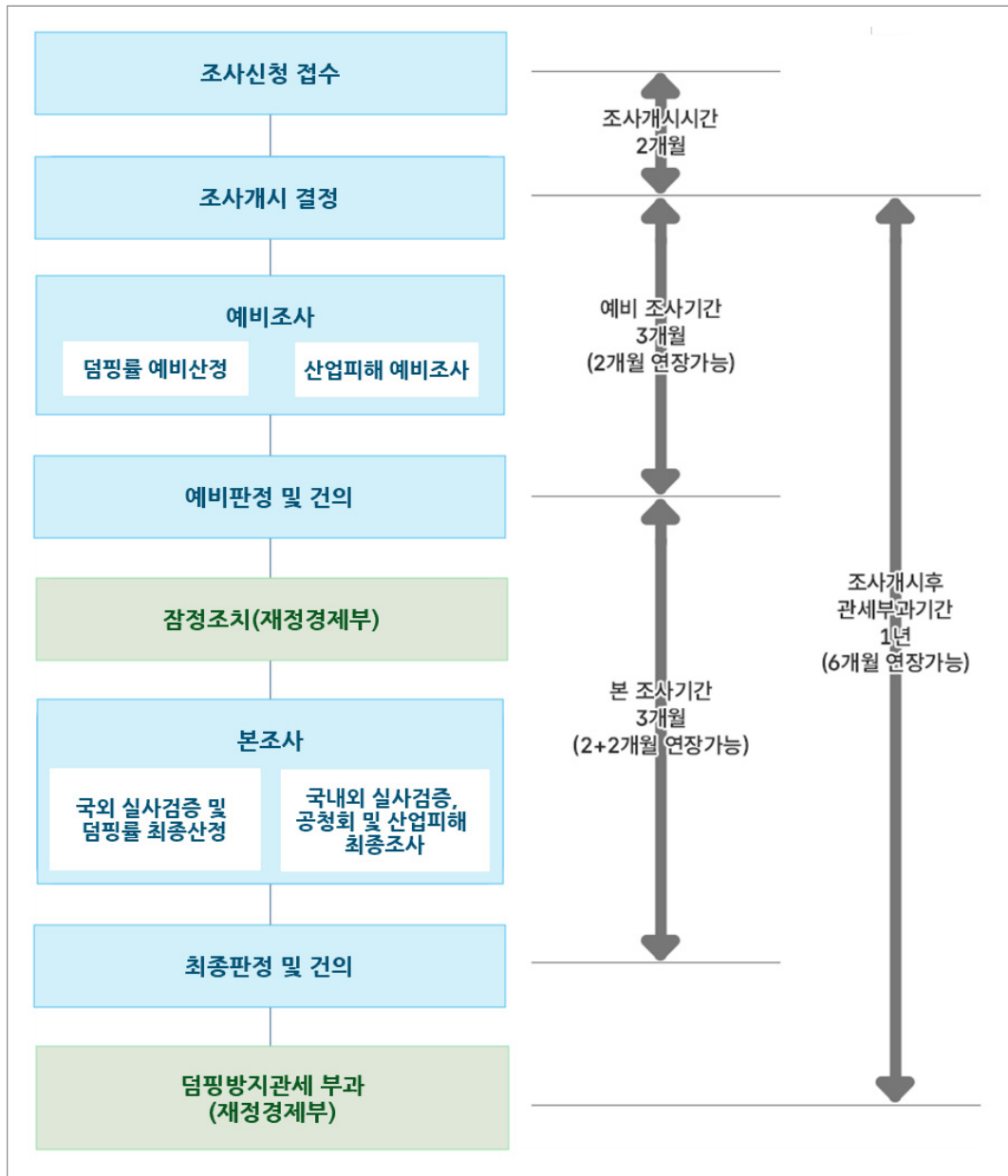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외국물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국내 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해 해당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관세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59조).

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에 대한 조사신청으로 같음하고 있다(「관세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조사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하며,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해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4항).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무역위원회에서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출하면(「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게 된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7항).



한편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이때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해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관세법」 제56조 제1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 5항).

4. 덤핑방지관세 관련 판례 검토

(1) 동종물품 판단과 HS 품목번호의 의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수입 가능한 거의 모든 물품을 그 종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분류한 기준표다. 이와 같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어떤 물품들이 각 품목번호가 서로 동일하다면 위 물품들은 사실상 동종의 물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종물품의 범위를 품목번호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지는 쟁점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특히 ‘동종 물품’ 판단의 기준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고등법원 2020.11.13. 선고 2019누12998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수입 가능한 거의 모든 물품을 그 종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분류한 기준표다. 이와 같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어떤 물품들이 그 각 품목번호가 서로 동일하다면 위 물품들은 사실상 동종의 물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종물품의 범위를 품목번호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판시는 HS 품목번호가 동종물품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춘 합리적인 기준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즉,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HS 품목번호

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동종품목의 범위에 관하여, 만약 품목번호 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한 업체들이 동일한 소비자를 두고 경쟁하는지 여부, 다른 기능이 부가되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좁게 본다면, 상품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법령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위 법령이 형해화될 수 있고, 이를 우려한 국내 기업들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이 폭증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오직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기능을 부가하거나 모양을 살짝 변형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게 됨으로써 자원분배의 왜곡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중략> …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관한 동종품목의 범위를 품목번호를 이용하여 정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판단은 그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물품이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무역과 산업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요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관세의 부과·징수를 적정하게 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관세법」 등 관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품목’의 범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동종품목 판단을 과도하게 세분화할 경우, 오히려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가격 수준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관계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외 회사를 비롯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들에 대해 개별 덤핑 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나 덤핑차액 등에 대한 조사없이 덤핑방지관세율을 23.61%로 단일하게 정했다더라도 이는 「관세법」 제51조,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덤핑방지관세 사건에서 수입자가 자주 주장하는 논리는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 높으므로 덤핑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2017.1.6. 선고 2016구합51249 판결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가 개별 수입자의 거래가격이나 체감 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가 아님을 전제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외 회사를 비롯하여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들에 대하여 개별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나 덤핑차액 등에 대한 조사없이 덤핑방지관세율을 23.61%로 단일하게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세법」 제51조,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덤핑방지관세는 개별 거래의 가격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무역구제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5. 시사점

이 판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덤핑방지관세 제도는 개별 수입자의 손익이나 거래 현실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라는 점이다.

따라서 수입자가 주장하는 고가수입, 특정 용도 사용, 제한된 거래처 납품 등의 사정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부과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면, 덤핑방지관세 제도 자체가 거래별·사안별로 흔들리게 돼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 및 동종물품을 판단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역시 중요한 시사점이다. HS 품목번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인 분류기준으로서, 덤핑방지관세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판례는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외형적·기능적 변형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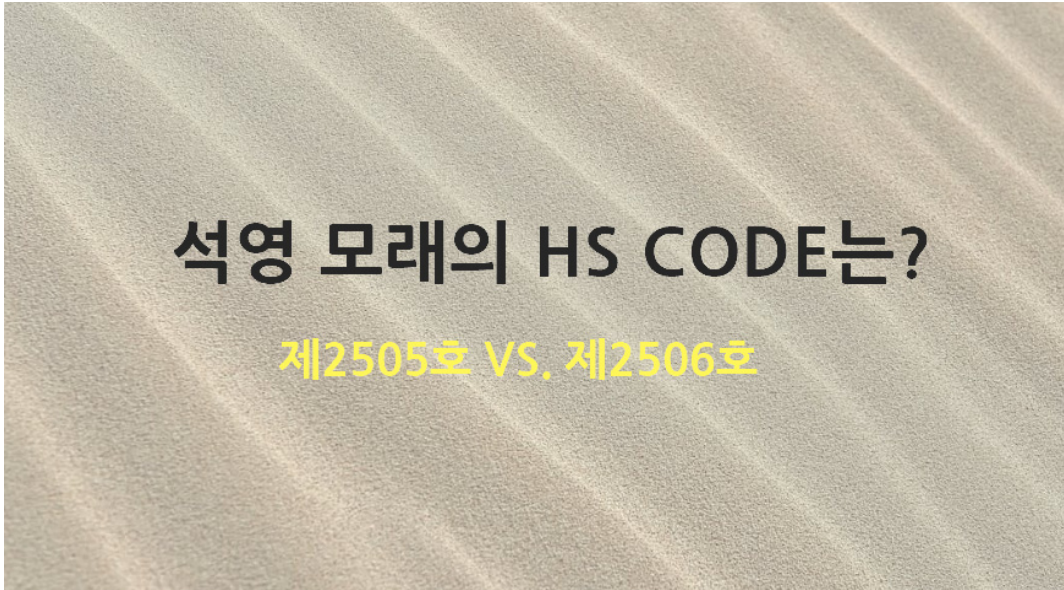
6. 맺음말

덤핑방지관세 관련 분쟁은 종종 개별 수입자의 억울함이나 거래 현실에 대한 호소로 전개되지만, 판례의 흐름은 이러한 주장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덤핑방지관세는 개별 거래의 공정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 물품 단위의 조사와 법령에 따른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향후 덤핑방지관세 분쟁에 있어서는 개별 수입자의 가격 수준이나 사용 목적을 중심으로 한 주장보다는, 조사대상물품 해당 여부·동종물품 판단기준·법령상 제외요건 충족 여부 등 제도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판례가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며,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산화규소 99% 이상의 석영 모래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모래는 어디에나 있고 발에 치일 정도로 많지만, 바닷가의 모래는 아름다운 휴양지 풍경을 만들고, 건설 현장의 모래는 콘크리트가 돼 도로와 건물을 세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화면의 유리, 자동차 앞 유리, 태양광 패널 같은 첨단산업 제품도 결국 '모래'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모래는 다 같은 모래일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다. 모래는 채취 장소와 성분(실리카 함량), 입자의 크기(입도), 세척·건조·선별 등 처리 정도 등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특히 '규사(석영 모래)'처럼 이산화규소(실리카)가 높은 모래는 유리·주조·여과재·전자산업 원료로도 쓰이며 단순한 건축자재를 넘어 산업 원료로 평가되기도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이산화규소(SiO_2) 99% 이상의 백색 미세 분말상으로 '규사 모래'에 해당하는 제2505.10-0000호로 신고했다.

제2505호는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2505.10-0000호는 ‘규사’를 특개하고 있다.

HSK			호 용어
2505	10	0000	규사
	90		기타

규사는 SiO₂ 함량이 매우 높은 모래를 의미한다.

최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는 사례를 통해 ‘규사 모래’와 ‘모래’를 구분했는데 그 기준으로 SiO₂ 함량이 95% 이상인 모래에 대해서는 ‘규사’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본 물품의 경우 SiO₂의 함량이 99% 이상이므로 ‘규사 모래’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규사 모래로 품목분류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2505호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거래 관습상으로 금속의 추출이 가능한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하고, 이 호에는 모든 천연의 바다 모래·호수 모래·강변 모래나 규사(quarry sand)(즉 광물이 자연 붕괴하여 다소 미립자의 형태인 모래)는 분류하나, 인공적인 방법(예: 분쇄)으로 얻은 모래와 가루는 제외한다(제2517호나 암석에 관한 호에 분류)”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연적으로 다소 미립자 형태인 모래는 제2505호에 분류할 수 있겠으나, 인공적으로 분쇄한 모래는 제2505호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본 물품의 제조공정도를 보면, 광물을 채굴해 분쇄·부유선광 등의 공정을 거쳐 인위적으로 분말화했다.

제2506호에서는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툽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는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a) 가공하지 않은 상태(crude state)의 것이거나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허용한 이상의 어떤 공정도 하지 않아야 한다. ; 이를 위해 파쇄축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열처리인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허용한 공정으로 본다.

(b) 보석(예: 수정·연수정·자수정·홍수정)의 제조에 적합한 변종이나 품질이 아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석영이 공업적인 목적[예: 압전기용 석영(piezo-electric quartz)이나 공구 부분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도 제외한다(제7103호).”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석고·석회·시멘트
 주 제1호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하소(煨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제2505호에서 규정한 처리 방법 외의 방법(분쇄)으로 가공했으므로 제2505호에서 제외되며, 제25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고, 보석 제조용의 품질 또한 아니므로 제2506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물품은 불순물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석영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506.10-3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SILICA SANDS	2505.10-0000 (FUS1 0%)	Quartz powder	2506.10-3000 (A 3%)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3월
발간 예정

관세·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4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미발효)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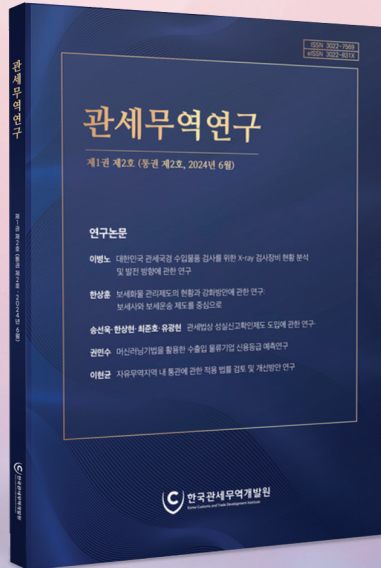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